

정부,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20일 축산업 허가상한선 기준과 축산업 참여금지대상기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업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짜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도 개정·고시하였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 종전에는 양돈업허가업체 중 모돈 1천두 이상 사육두수에 대해 수출 또는 계열화사업을 할 경우 이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 하고 ▲ 대규모 양돈업체에는 종전과 같이 모돈은 두당연간 200kg, 종빈돈은 100kg의 돼지고기 수출 의무량을 부과하며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전문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 농림수산부고시 제90-4호
90년 1월 20일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물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 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2 제1항, 법 제13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돈업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 법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8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업등록을 받았거나 양돈업허가를 받은 자와 종돈업과 양돈업을 겸업하는 자중 일정기준 이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수출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에 관한 사항

제2조(신규허가금지 등) ①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이를 금지한다.

② 양돈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상한선인 모돈 1,000두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축산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법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1년 3월 30일까지 허가상한선인 모돈 1,000두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③ 동일인이 분산하여 소유하는 양돈업체와 관련법인이 영위하는 양돈업체가 모돈을 합하여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이 지침시행 후 허가상한선인 모돈 1,000두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업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돼지고기 수출의무량 부과)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수출의무량을 부과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업등록을 한 자중 종돈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자.

2.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돈업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13조의 제1항 및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종돈업과 양돈업을 함께 하는 자중 종돈과 모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사육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무량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수출의무량은 전년도 말 사육두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수출의무 이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양돈업허가상한선인 모든 1,000두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1,000두에 대한 수출의무량만을 부과한다.

제4조(수출실적신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의무량이 부과된 자는 수출의무기간과 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출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의무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면장

2. 수출의무자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면장

나. 외화획득용원료(수출물품) 수매 승인서

(대외무역법관리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다. 수출실적확인증명서

(대외무역법관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라. 농장별 규격돈 구매 및 수출물량확인서(수출업체발행)

마. 세금계산서(수출업체발행)

바. 기타 증빙자료

제5조(감축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수출실적을 확인하고 수출의무자가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의무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상응하는 모든 또는 종돈두수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이내에 감축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수출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1월의 납부기한을 주어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출의무자가 초과사육부과금 부과일로부터 1월이내에 수출미이행에 상응하는 모든 또는 종돈

의 감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돈업 허가·등록 및 종돈업 등록을 취소한다.

제6조(분산영위양돈장 등의 관리) 시·도지사는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을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모든 또는 종돈 500두 미만의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과 종돈을 합산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무량을 부여한다.

② 시·도지사는 동일인이 타인의 명의로 영위하는 양돈업 또는 종돈업임이 입증되거나 관련법인임이 입증될 수 있는 분산영위 양돈업 또는 종돈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등록했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허가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양돈업 또는 종돈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조치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축산업참여금지 대상 대기업확인 등) ① 시·도지사는 축산법 제13조 제1항, 동법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양돈, 양계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이 2개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모두 합한 것으로 대기업자의 범위를 산정한다.

1. 사업자등록증(업종확인) : 관할세무서 발행

2. 소득세원천징수부(종업원수 확인) : 관할세무서 발행

3. 결산서(자산규모확인) : 당해 회사발행(세무서 확인)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은행감독원의 예산관리시행세칙 제2조의 계열기업군

은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계열기업을 말한다.

(4) 이 지침 시행전부터 축산업 참여금지대상 대기업으로서 축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등록 또는 허가 받은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출의무량 부과기준(제3조 제2항 관련)

		모 돈	종 돈
기 준 두 수		전체 허가 또는 등록두수	전체 종반돈 보유두수
연 간 두 당		19두	18두
분 만 두 수		(9.5두/복×2회전)	(9두/복×2회전)
출 하 두 수	수 출 비육돈	10두 (19두×육성율 90% × 규격돈 60%)	5두 (18두×육성율 90% × 종돈선별 50% × 규격돈 60%)
비 육 돈 두 당	수출육생산량	20kg	20kg
모돈두당수출육 생산량(연간)		200kg	100kg

허가상한선(모돈 1,000두) 초과사육 업체 현황

('89. 6말 현재)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육 현 황		비 고
			모 돈 수	총 사육 두수	
제 일 농 장	김 병 기	경기, 이천	2,877	25,774	허가
제 일 종 축	이 인 혁	이천	2,155	13,563	〃
상 원 축 산	한 춘 섭	김포	1,095	10,250	〃
남 부 농 산	권 태 은	경기, 송탄	304	2,588	〃
남 부 행 계	〃	충남 홍성	761	11,826	〃
			1,065	14,414	
사 조 축 산	주 진 규	충남 아산	1,000	15,499	〃
부 경 농 산	주 진 우	충북 천원	261	3,878	등록
계			1,261	19,377	
두 산 유 업	남 궁 혁	충산 서산	425	5,112	허가
두 산 농 산	조 사 홍	경북 영일	605	7,241	〃
계			1,030	12,353	
합 계	6 개 소		9,483	95,731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9년도에 기히 수출의무량을 부과한 사항은 모돈 1,000두 이상과 모돈·종돈을 합하여 1,000두 이상인 업체는 '90년도에 수출의무량을 부과시에는 수출의무이행기간을 '90. 3. 1~12. 31까지로 하고 1,000두 미만의 허가업체와 모돈·종돈을 합하여 500두 이상 1,000두 미만인 업체는 '90. 6. 1~12. 31까지로 할 것이며 '91년도 부터의 수출의무량부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43개그룹) 해당업체중 양돈업 참여업체 현황

('89. 6. 30 현재)

그룹명	양돈장명	소재지	등록·허가 모돈수	사육규모		
				모돈	총번돈	계
삼성 럭키금성 두산	제일제당	경기·용인	1,000두	943두	93두	1,036두
	연암축산전문대	충남·천원	420	350	50	400
	두산농산	경북·영일	1,000	605	109	714
	두산유업 (소계)	충남·서산	540 (1,540)	425 (1,030)	109 (218)	534 (1,248)
해태 미원 벽산 삼양사	해태산업	전남·나주	279	—	279	279
	제일농장	경기·이천	1,000	2,877	770	3,647
	대한종합식품(펭귄)	충남·논산	300	300	—	300
	삼양사	전남·영광	986	920	340	1,260
7개그룹	8개농장	—	—	6,420	1,750	8,170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89. 4. 1 경제기획원발표)

순위	그룹명	계열사수	비고	순위	그룹명	계열사수	비고
1	현대	37	제일제당 연암축산 두산농산·두산개발	24	고려합섬	7	해태산업 제일농장
2	대우	28		25	한보	4	
3	삼성	42		26	해태	10	
4	럭키금성	59		27	미원	19	
5	쌍용	21		28	삼환기업	11	
6	한진	16		29	한라	6	
7	선경	20		30	우성건설	7	
8	한국화약	26		31	극동석유	4	
9	대림	13		32	통일	17	
10	롯데	32		33	태광산업	8	
11	동아건설	16		34	태평양화학	19	
12	한일	12		35	풍산금속	6	
13	기아	10		36	강원산업	14	대한종합 삼양사
14	두산	21		37	벽산	14	
15	범양상선	4		38	봉명	20	
16	효성	13		39	포철	21	
17	한국제강	13		40	삼양사	7	
18	삼미	11		41	동국무역	10	삼양사
19	한양	4		42	동양양	7	
20	극동건설	9		43	아남산업	12	
21	코오롱	16		계	43	672	
22	금호	12					
23	동부	14					